

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20-36호

2020년도 구미시설공단

직원(일반직, 현업직) 공개경쟁채용 공고

-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-

『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일류 공기업』 구미시설공단과 함께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0년 4월 29일

구미시설공단이사장

1. 채용 분야 및 예정인원

채용직종	채용분야 (직렬·직무)	채용예정인원	직무내용	비고
계	9개 분야	29명		
일반직 (8급)	행정(행정)	4명	· 사무행정 업무관리 전반	
	행정(행정)-장애인	1명	· 사무행정 업무관리 전반	장애인제한경쟁
	공업(기계)	4명	· 기계공정 운영 및 유지보수 등	
	공업(전기)	4명	· 전기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등	
	공업(토목)	1명	·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	
	환경(수질)	8명	· 수질관리 및 수처리 공정운영 등	
현업직	운전원	5명	· 특별교통수단 운전 및 차량관리	
	체육강사(수영)	1명	· 수영지도 및 안전근무, 수영장 관리	
	화장로	1명	· 화장로 운영 및 유지관리	지역인재 (옥성면 농소2리)

※ 1개의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(중복지원 불가)

※ '행정'직렬의 경우 일반경쟁(4명)과 장애인 제한경쟁(1명)으로 별도 구분하여 경쟁

※ 보수 및 근로조건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-클린아이(<http://www.cleaneye.go.kr>) 내 공시자료(취업 규정, 보수규정 등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응시자격 및 거주지 제한

○ 공통 응시자격

- 응시연령 : 18세 ~ 60세
 - ※ 1960.07.01.이후 ~ 2002.12.31.이전 출생자(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정년의 범위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※ 적용기준일 : 공고일(2020. 4. 29.)
- 직종, 직렬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※ '채용분야별 자격요건' 참조

- 공단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자격기준을 갖추고 같은 규정 제12조 **결격사유***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 ※ 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일

***결격사유(구미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2조)**
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및 정부, 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사람
-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공직(조합장, 새마을금고이사장 포함)선거에 입후보 등록 중인 사람이나 정당의 간부급 이상인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2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○ 거주지 제한

응시분야	제한사항
일반직 (전 분야) 및 현업직 (운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기간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• 또는,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
현업직 (체육강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대구·경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기간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• 또는,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·경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
현업직 (화장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구미시 옥성면 농소2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기간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

※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

-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의 경우 연속하지 않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총 거주한 기간 건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 → 36개월 산정기준 : 과거 거주사실 건별 월(月)단위 합산 + 건별 잔여일수 합산(잔여일수 30일은 1월로 계산)
-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별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을 기준으로 함

○ 채용분야별 자격요건(※ 응시당시 자격을 소지하고 임용일까지 계속 유효한 것)

일 반 직

응시분야	채용인원	자 격 요 건
행정(행정)	4명	•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응시자격 없음
행정(행정) [장애인 제한경쟁]	1명	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(장애인의 기준)제1항에 해당하는 자 - 장애인의 경우 '장애인증명서'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되며, 장애인 증명서 이외의 증빙(단순 복지(장애인)카드 및 수첩, 장애인증명 캡처 화면 등)을 제출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- 국가유공자(지원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공무원 포함)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, 보훈보상 대상자증,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•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출·퇴근이 가능한 자
공업(기계)	4명	• 건설기계기술사, 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기계정비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
공업(전기)	4명	• 전기기능장,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
공업(토목)	1명	• 토목기사, 토목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
환경(수질)	8명	• 수질관리기술사, 수질환경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

현 업 직

응시분야	채용인원	자 격 요 건
운전원	5명	•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•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※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운전경력증명서상 공고일 기준 5년간 교통사고 이력이 없고, 해당기간 중 면허정지·취소 등의 사항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 • 운전적성정밀검사 '적합' 판정자 ※ '적합 판정일'이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이어야 함 → 상기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자
체육강사(수영)	1명	•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) 2급 이상이며, 수상인명구조 자격 구비자
화장로	1명	•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응시자격 없음

3. 직종별 전형절차



※ 현업직의 경우 필기시험(공통과목+선택과목)이 없으며, 인성검사+적성검사 시행

4. 시험(전형)방법

○ 필기시험 → 일반직 응시자만 해당

- 필기시험은 매 과목당 100점 만점, 과목당 50문제, 객관식 4지선다형
- 합격기준
 - 매 과목별 40%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가산점을 더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인원의 150%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(※ 선발 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합격자로 함)
 - 필기시험 합격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(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)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
 - 필기시험 합격자 외 차순위 성적자순 최대 2명을 ‘일반직 1차(필기)전형 예비 합격자’로 결정(※ 동점자로 2명을 초과할 경우 모두 예비합격자로 결정)
- 분야별 시험과목

응시직종	응시 분야	필기시험		비고
		공통과목	분야별 선택과목	
일반직 (8급)	행정(행정)	NCS 직업기초능력평가	행정학	
	공업(기계)		기계일반	
	공업(전기)		전기이론	
	공업(토목)		토목설계	
	환경(수질)		환경공학개론	

※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경우 별도 첨부한 직무설명서의 직업기초능력에 기재된 영역에 의함

○ 서류전형

- 대 상 : 일반직 필기시험 합격자 및 현업직 응시자 전원
- 합격기준 : 응시자격 기준, 합격자 결정과 관련 있는 증빙서류(증빙서류 제출기간 중 등록된 서류에 한함)의 검증을 실시하여 합격·불합격만을 결정

○ 인·적성검사 → 일반직 응시자의 경우 인성검사만 실시

- 대 상 : 서류전형 합격자
- 검사방법 : 오프라인 검사
- 합격기준
 - 일반직 : 합격·불합격은 없으며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 및 최종합격자 중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시 활용(※ 인성검사 미 응시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)
 - 현업직 : 고득점자(합산·평균)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더한 범위내 합격자로 결정(※ 합격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)
 - 현업직 인·적성검사 합격자 외 차순위 성적자순 최대 2명을 ‘현업직 2차(인·적성검사) 전형 예비합격자’로 처리(※ 동점자로 2명을 초과할 경우 모두 예비합격자로 결정)

○ 면접시험

- 대 상 : 일반직 인성검사 완료자, 현업직 인·적성검사 합격자
- 평정요소 : 5개 항목
 -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면접 시 평정방법
 - 일반직 : 평정 요소별 상·중·하로 평정하고 우수, 보통, 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

등 급	일반직 면접시험 등급 결정방법
우 수	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"상"으로 평정한 경우
보 통	'우수' 및 '미흡' 외의 경우
미 흡	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한 경우

- 현업직 : 평정 요소별 상(20점), 중(10점), 하(5점)로 평정하고, 각 면접위원의 득점합계를 모두 더하여 면접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(가산점수가 있는 경우 평균점수에 가산점수를 더함)를 산출

5. 가산점 적용

○ 공통사항

-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되는 경우 합산
- 모든 가산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

○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산점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로 필기시험(현업직의 경우 인·적성검사 및 면접시험)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%또는 5% 가산
-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(10% 또는 5%)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'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함

○ **자격증 가산점** → 일반직 응시자만 해당

- 일반직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 중 ‘기사’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% 가산(‘행정’분야 제외)
-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

○ **전형별 가산점 적용 기준표** → 과목별 또는 면접시험의 4할이상 득점한 자 적용

구 분	가 산	일반직	현업직	비 고
필기시험	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산	○	해당없음	
	자격증 가산	○	해당없음	
서류전형	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산	해당없음	해당없음	
	자격증 가산	해당없음	해당없음	
인성검사 (인·적성검사)	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산	×	○	
	자격증 가산	×	해당없음	
면접시험	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산	해당없음	○	
	자격증 가산	해당없음	해당없음	

6. 합격자 결정

○ **최종합격자 결정**

- 일반직
 - 면접시험에서 "우수"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. 다만 "우수"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(가점사항 미포함)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
 - "보통"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"우수"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, "미흡"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
 - ※ 동점자 우선순위 :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→ 선택과목 고득점자 → NCS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→ 인성검사 고득점자 순

- 현업직

- 면접시험 결과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
- ※ 동점자 우선순위 :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→ 인·적성검사 고득점자 순

○ **최종 예비합격자 결정**

- 최종 예비합격자 :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 성적자순(동점자 우선순위 적용) 최대 2명을 예비합격자로 결정
- ※ 최종 예비합격자 결정에 있어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2명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연소자 순으로 결정하며,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함

7.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방법

○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

- 대 상 : 최종합격자(또는 추가합격자)
- 시 기 : 최종합격자(또는 추가합격자)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
- 신체검사 : 공무원신체검사서 제출(※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)
- 결격사유조회 : 관련기관 결격사유 등 확인
※ 「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제3조의2에 의한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(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후 최종불합격 판정 시에만 해당) 기준에 해당하는 자,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공공기관 취업제한대상자는 임용될 수 없음

○ 임용방법

-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,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성적순위에 따라 순차 임용
※ 등록을 필한 임용후보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
- 다음의 경우 예비합격자 범위내 순서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에 달할때까지 추가 합격 처리 후 임용후보자 등록
 -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
 - 기한내 임용후보자 미등록, 신체검사 불합격, 응시에 필요한 자격이 허위·유효기간만료·취소로 확인, 결격사유 발생, 취업제한자 발생, 채용비리로 인한 최종합격 취소 등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
 - 수습기간 이내 자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
※ 임용자의 수습기간 : 일반직 3개월, 현업직 2개월

8. '채용비리 피해자 구제' 안내

○ 일반사항

- 전형별(서류심사 및 일반직 인성검사 제외) 합격자 외 차순위 성적자순 최대 2명(동점자로 2명을 초과할 경우 모두 예비합격자로 처리)을 '전형별 예비합격자'로 결정
- '전형별 예비합격자'의 유효기간은 해당전형 합격자 발표 후 1년까지로 함
- '전형별 예비합격자'는 '최종 예비합격자'와 구분하여 관리

○ 전형별 예비합격자

- 전형별 합격자 중 다음 단계의 전형 전일까지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성적순에 따라 해당전형 예비합격자를 해당전형 합격자로 결정
- 채용비리가 다음 단계의 전형 이후에 적발되거나 해당전형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내에 발견될 경우에는 성적순에 따라 해당전형 예비합격자는 다음 공개채용 시 해당전형까지 합격자로 함

○ 최종 예비합격자

- 최종 예비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년 이내에 최종합격자중 최종전형 (면접시험)에서의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·발견될 시 ‘최종 예비합격자’ 중 성적순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임용후보자 등록

○ ‘채용비리’에 의한 합격자 취소 및 예비합격자 합격 결정의 범위

[채용비리에 의한 합격자 취소 결정]

- ▶ 전형별 합격자 중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불합격 처리되며,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

[채용비리에 의한 예비합격자의 합격자 결정 범위]

- ▶ 전형별 합격자중 채용비리로 불합격 처리된 인원의 범위내에서 예비합격자 중 성적순으로 해당분야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처리(해당 예비합격자의 성적이 동점으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합격처리. 다만,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는 동점자우선순위, 연소자순으로 적용)

9. 전형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

구 분	추진 일정	비 고
채용공고	2020. 4. 29.(수) ~ 5. 19.(화)	· 21일간
응시원서 접수	2020. 5. 11.(월) ~ 5. 19.(화)	· 온라인(채용사이트) 접수
필기시험 안내 공고	2020. 5. 20.(수)	·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안내
필기시험	2020. 5. 23.(토)	· 대상 : ‘일반직’ 응시자
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(서류전형 안내 공고)	2020. 5. 25.(월)	· 홈페이지 공고 → 채용사이트
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(채용사이트 자료 업로드)	2020. 5. 25.(월) ~ 5. 27.(수)	· 대상 : 일반직 필기시험 합격자 및 현업직 응시자
서류심사	2020. 5. 28.(목) ~ 5. 31.(일)	· 증빙서류 검증
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(인·적성검사 장소 공고)	2020. 6. 2.(화)	· 홈페이지 공고 → 채용사이트
인·적성검사	2020. 6. 6.(토)	· 일반직 → 인성검사 · 현업직 → 인·적성검사
인·적성검사 합격자 공고 (면접시험 장소 공고)	2020. 6. 9.(화)	· 일반직 → 면접안내 · 현업직 → 합격자 공고 및 면접안내
면접시험	2020. 6. 13.(토)	· 대상 : ‘일반직 인성검사 완료자’ 및 ‘현업직 인·적성검사 합격자’
최종합격자 발표	2020. 6. 16.(화)	· 일반직, 현업직 최종합격자 발표 (최종예비합격자 별도 통보)
임용등록	2020. 6. 17.(수) ~ 6. 23.(화)	· 임용후보 등록 · 신체검사, 결격사유 등 조회 등
신규임용	2020. 7. 1.(수) ~	· 채용분야별 합격순서(성적)순 임용 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까지)

※ 상기일정은 ‘코로나-19’ 관련 및 ‘공단 사정’에 따라 일부(시험일, 임용등록 등) 변경될 수 있음.

10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0. 5. 11.(월) 09:00 ~ 2020. 5. 19.(화) 18:00까지
- 접수처 : 구미시설공단 채용사이트(<http://ginco.saramin.co.kr>)
- 접수방법 : 채용사이트에서 **인터넷 접수만 가능**
 - 접수 시작일부터 채용사이트(시스템) 접속이 가능합니다.
 -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 - 입사지원서 수정 및 삭제는 **접수마감일 18:00까지만** 가능합니다.
 - 최종 **지원여부(접수확인) 및 제출서류(필수서류)를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- 작성방법 : 접수기간 중 채용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
- 사진등록
 - 등록된 사진은 서류심사와 분리되며, 부정방지를 위하여 ‘필기시험, 인·적성검사, 면접시험 당일 신분확인용’으로만 사용됩니다. 또한, 목적달성 후 지체없이 파기 됩니다.
 - 사진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, 모자나,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.

○ 제출서류 → 시기별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확인 필

[1. 응시원서 접수 시 : 2020. 5. 11. ~ 5. 19.]

제출서류 (필수사항 등록·제출 필)		등록 또는 입력 사항	제출 대상	제출 방법
입사지원서(필수)		· 채용사이트(시스템)에서 지정된 사항 입력	공 통 (응시자 전원)	온라인 입력 · 등록 (업로드)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필수), 공정채용확인서(필수), 채용시험 시행방침 준수 약약서(필수)		· 채용사이트에서 제공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각각 등록		
증명사진(필수)		· 채용사이트(시스템)에서 지정된 메뉴에 등록		
「가산점 적용」 확인서류 (가산점 해당 응시자만 제출)	자격증 가산점 대상자	· 분야별 자격요건 중 ‘기사’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사항 입력(자격번호 등) 및 증빙서류(자격증 앞·뒤 사본 또는 증명서) 등록	일반직 응시자 (해당자만)	
	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	· 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는 보훈번호, 가점사항 입력 및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) 등록	응시자 전원 (해당자만)	

※ 원서접수 기간 내 ‘가산점 적용 확인서류’ 제출이 누락 될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(원서접수 마감 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)

※ 가산점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(산업기사)은 원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으며,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기간에 등록

[2. 서류전형 - 증빙서류 제출 시 : 2020. 5. 25. ~ 5. 27.]

제출서류 (필수사항 등록·제출 필)	등록 또는 입력 사항	제출 대상	제출 방법
자기소개서 (전원 필수 제출)	· 채용사이트에서 지정된 사항 입력 및 등록	공 통 (일반직 필기합격자 및 현업직 응시자 전원)	온라인 입력 · 등록 (업로드)
주민등록초본 (전원 필수 제출)	·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등록 ※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		
자격증 (자격증 필요 분야 응시자 필수 제출)	·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사항(자격번호 등) 입력 및 증빙서류(자격증 앞뒤 사본, 증명서 등) 등록 ※ 자격증 요건이 없는 분야(행정, 화장로)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※ 원서접수 시 가산점을 위하여 '기사'이상 자격증을 기 등록한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		
교육 및 경력 증명서류 (해당분야 직무관련 교육이수 실적 및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출)	·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 내 작성한 경력 및 교육이수 확인용 증빙서류 등록 (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, 교육이수증 등) ※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 내 교육 및 경력 사항 작성 전 증명서류 첨부(발급) 가능여부 확인 필 · 경력증명서류 내 재직당시 업무 필수 기재		
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증명서 (장애인경쟁 필기합격자 필수 제출)	· 장애인의 경우 '장애인증명서'를 등록 · 국가유공자(지원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공무원 포함)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, 보훈보상 대상자증,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록	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 중 필기합격자	
운전경력증명서 (운전원 응시자 필수 제출)	·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(2015.4.29.~2020. 4.29.) 운전면허경력, 교통 사고경력이 포함된 증명서 등록	운전원 응시자	
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(운전원 응시자 필수 제출)	·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'적합' 판정표 등록 ※ 판정일이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(2017.5.19.~2020.5.19.)에 속한 '적합' 판정자		

- ※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은 반영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서류 심사(검증)에 반영
- ※ 서류전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하여 서류전형 등록기간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응시자격 적합여부 심사(검증)하여 합격·불합격만을 결정
- ✓ 서류전형 시 제외서류 : 증명사진, 직무관련 교육이수 및 경력 증명서류

[서류전형 불합격 예시]

- ▶ 서류검증 결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(공통자격, 분야별 응시자격, 분야별 거주지제한)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▶ 검증이 불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
- ▶ 제출기한 내 분야별 **응시자격 확인용 필수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**
- ▶ 공고일 전까지 발급분 또는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남자일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**주민등록초본을 제출**한 경우(상기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불합격 처리)
- ▶ 증빙서류 임의수정 및 허위사실로 확인 된 경우
- ▶ 현업직 운전원 응시자의 경우 '운전경력증명서'의 범위(공고일 기준 최근 5년) 및 '운전적성정밀 검사종합판정표'의 범위(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)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
- ▶ 그 밖에 상기 부적합 사항에 준하는 사유

[3. 임용등록 시 : 2020. 6. 17. ~ 6. 23.]

제출서류	작성 또는 제출 사항	제출 대상	제출 방법
임용등록원서	· 채용사이트(최종합격자 공고)에서 제공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	최종 합격자 전원	오프라인 제출
졸업증명서	· 인사기록카드 내 학력 및 전공 입력을 위한 졸업증명서 제출		
기본증명서	· 결격사유(등록기준지) 조회용 기본증명서 (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) 제출		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· 공공기관 재직경력 확인 및 취업제한자 조회 (경력증명용으로 기 제출한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)		
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	· 합격자 발표 이후에 검사발급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		
채용시스템 등록서류 전체 원본	· 채용시스템에 기 등록된 증명서류 전체 원본 제출 (초본,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 원본)		
서약서	· 채용사이트(최종합격자 공고)에서 제공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		

11. 응시자 안내사항

○ **채용서류 작성 및 등록 시 유의사항**

-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, 자격종 등 반드시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1인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시 출신지역, 출신학교(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e-mail), 신앙, 성별, 연령, 가족관련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및 면접 시 편견요소는 일체 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(※ 기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해당내용은 면접 시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.)
- 응시자는 입사지원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채용서류 반환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붙임 2. 참조)를 작성하여 사무실(채용부서), 팩스(054-480-2009) 또는 이메일(recruit@ginco.or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,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우리 공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(2020. 7. 1. ~ 2020. 7. 31.)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를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 - ※ 채용사이트 온라인 등록서류는 2020. 7. 31.까지 보관 후 일괄삭제
 - ※ 예비합격자의 경우 유효기간까지 보관 후 별도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함

○ 기타 안내사항

-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며,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,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.
- 최종합격자는 1년 이내 임용되며, 공단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(일반직 3개월, 현업직 2개월)이 적용됩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까지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 「공단정보」 (<http://www.ginco.or.kr>)란 또는 채용사이트(<http://ginco.saramin.co.kr>)에 공고합니다.
- 채용시험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(붙임 3. 참조)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Q&A 또는 공단 경영지원팀(☎ 054-480-202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2. 코로나-19 관련 채용방침 안내
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응시자 제한

구 분	필기시험 (일반직)	인·적성검사 (현업직)	인성검사 (일반직)	면접시험 (일반직, 현업직)
일반응시자	일반시험실 응시	일반시험실 응시	일반시험실 응시	일반면접 실시
이상증상자 (기침, 발열 등)	37.5℃ 이상 또는 기침·인후통이 있는 자 응시불가	37.5℃ 이상 또는 기침·인후통이 있는 자 응시불가	별도시험실 응시	개별면접 실시
자가격리자	모 든 전 형 응 시 불 가			
확진환자				

※ 채용과정 중 지역사회 감염 확산 또는 응시자 중 이상증상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 진행의 어려움으로 시험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
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험시행 방침 안내

- ‘일반직 필기시험’ 및 ‘현업직 인·적성검사’ 당일 기준 코로나-19 확진자, 자가격리자 및 이상증상자(37.5℃ 이상 또는 기침·인후통이 있는 자)는 해당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.

※ 고사장 입구에서 응시자 발열체크 및 37.5℃ 이상인 응시자 퇴실 조치. 단, 이상증상자 퇴실조치는 ‘일반직 필기시험’ 및 ‘현업직 인·적성검사’에 한함

- 필기시험(현업직의 경우 인·적성검사) 합격 후 다음 채용과정에서 확진판정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 우리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라며, 통보시점부터 모든 전형 응시가 불가합니다.

※ 다음단계 전형 응시불가로 해당전형은 불합격 처리되며, 예비합격자를 해당전형 합격자로 함. 다만, 상기 사유로 불합격 처리 된 자는 차기 공개채용 시 해당전형까지 합격 처리

※ 서류심사 및 일반직 인성검사의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 미운영으로 추가합격 미처리

- 필기시험(현업직의 경우 인·적성검사) 합격 후 다음 채용과정에서 이상증상이 발현된 자의 경우에는 별도고사장 운영 및 개별(1인) 면접을 실시합니다.
- 코로나-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‘채용시험 시행 방침’ 준수 약속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미 제출시 응시불가 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.

※ 채용사이트에서 제공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날짜작성 및 서명날인 후 등록(시기 : 원서접수 단계)

-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로 확정·인지한 응시자가 우리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응시에 참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그에 따른 인적·물적·공단 이미지 손상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응시자가 책임을 지며 보상하여야 합니다.

○ 고사장 운영방침 안내

-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소독 후 입실이 가능 합니다.
- 시험 종료 후 이상증상자는 타 응시자와 구분하여 퇴실 조치 예정이니,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퇴실하시기 바랍니다.
- 마스크 미착용 등 ‘코로나-19 예방수칙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실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-19로 인한 학교 등 고사장 대관이 불가능 할 경우 일정이 연기되거나, 우리공단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시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※ **상기 ‘코로나-19 관련 채용방침’은 코로나 경보하향, 상황종료 등에 따라 변경·배제 될 수 있습니다.[방침 변경·배제 시 별도공고 등을 통하여 안내]**

- 붙임 1. 직무설명서 1부.
2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서식) 1부.
3. 채용시험 이의신청서(서식) 1부.